#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4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한병도・박지원・박 정

김영배 · 임호선 · 위성곤

서영교 · 이광희 · 황운하

이해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

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형사공탁의 예외)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의 죄. 다만, 제262조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공탁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해당---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 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 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 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 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 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받 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 <신 설> 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 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④· <u>⑤</u> (생 략)

<신 설>

-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u>⑥</u>· <u>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 제5조의3(형사공탁의 예외) 제5조 의2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 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
  - 1.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 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 제 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 조의 죄. 다만, 제262조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

     력범죄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

     력범죄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외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로
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
벌되는 죄